

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

1. 펀드명 : IBK 단기 국공채 공모주 증권 자투자신탁 2호[채권혼합]

2. 주요 변경 사항 :

- ①결산에 따른 최근현황 업데이트
 -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 업데이트(1.66%→2.47%)
- ②집합투자재산 평가방법 개정사항 반영
- ③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- ④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

3. 시행일 : 2022년 4월 1일

4. 변경 대비표

항 목	변경 전	변경 후
[요약정보] 투자비용	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1,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·비용 예시	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(단위%) 1,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·비용 예시
[요약정보] 투자비용	-	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
제 1 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	
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	-	바.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: X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	연혁추가
5. 운용전문인력	-	가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 최근현황 정보 업데이트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라.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 편차 : 1.66% <신설>	라.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 편차 : 2.47% <투자위험등급 변경내역>
12. 기준가격 산 정기준 및 집합투 자재산의 평가	나.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①상장주식: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장내파생상품: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 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으로 평가 다만, 평가 일의 공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일의 공표가 격에 의하여 평가	나.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①상장주식: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(해외증권시장을 포함)에서 거래된 최종시가(해외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) ②장내파생상품: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 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으로 평가 다만, 평가 일의 공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일의 공표가격 에 의하여 평가(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)

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p>	<p>-</p>	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<1,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·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> 최근현황 정보 업데이트</p>
<p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</p>	<p>(4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①세액공제(2015년 1월 1일부터) : (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+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)과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함. - 단,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함 <신설> -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^(주1)</p>	<p>(4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①세액공제(2015년 1월 1일부터) : (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+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)과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함. - 단,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함 - 단, 2020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연금계좌에 납입한 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만50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 적용 -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^(주1)</p>
<p>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p>		
<p>1. 재무정보</p>	<p>-</p>	<p>가. 요약재무정보 나. 재무상태표 다. 손익계산서 재무현황 업데이트</p>
<p>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</p>	<p>-</p>	<p>최근현황 정보 업데이트</p>
<p>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</p>	<p>-</p>	<p>가. 연평균수익률 나. 연도별수익률 다.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최근현황 정보 업데이트</p>
<p>제 4 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p>		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-	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규모 최근현황 정보 업데이트
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

간이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

1. 펀드명 : IBK 단기 국공채 공모주 증권 자투자신탁 2호[채권혼합]

2. 주요 변경 사항

- ①결산에 따른 최근현황 업데이트
 -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 업데이트(1.66%→2.47%)
- ②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

3. 시행일 : 2022년 4월 1일

4. 변경 대비표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[요약정보] 투자비용	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1,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·비용 예시	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<u>총보수 및 비용(단위:%)</u> 1,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<u>총보수·비용</u> 예시
투자비용	-	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
투자신탁 결산 및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정보 갱신 등	-	- 투자비용 관련 정보 - 운용전문인력 현황 자료 - 성과 관련 정보 등